##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박충권·조정훈·김성원

김정재 • 이인선 • 권성동

박준태 · 김승수 · 김태호

유상범 의원(10인)

###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통상, 경제, 외교·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성·유치·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우리가 기술우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정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 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 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을 지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 공계 인재·해외 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기본계획에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바.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의5 신설).
- 사.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세제 혜택,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 성이 인정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이공계인력의"를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 등을 포함한 이공계인력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이공계 분야의 학생 연구원,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박사후연 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 여 지원
-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 6의3.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

제8조의 제목 중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촉진"으로 하

- 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과학 교육 방법 고도화
  - 2.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등 융합 교육 콘텐츠의 개발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활용하여 재학생의 수학·과학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제9조의 제목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를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융자지원 등에"를 "융자지원, 제2항에 따른 이공학 진흥 등에"로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이하"이공학 진흥"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

- 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박사후연구원(박사학 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 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태 파악, 경력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부는 같은 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 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6(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 2. 구인 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 3.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 4.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 5.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6.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7(학생연구자의 안전·문화·성과 확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 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1. 학생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 2.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의 마련 및 운영
  - 3.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방 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의 제목 중 "재교육·재훈련"을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을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

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를 "재교육등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을 "재교육등을"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를 "재교육등의"로 한다.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과학기술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은퇴 후 우수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의3(일·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

육아 병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육아를 목적으로 재량근로제를 이용하는 연구인력과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되, 근로시간 단축 등은 각기관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한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이

공계인력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연구인력 육성 · 지원 체계 구축
  -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 3. 연구장려금 지원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의 연구장려금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창업,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 2. 해외진출 지원

-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
	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
	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이공계인력의</u> 육성·지원 및	1.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	육 등을 포함한 이공계인력의
의 구축	
<u>&lt;신 설&gt;</u>	1의2. 이공계 분야의 학생 연구
	원,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박
	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
	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7. (생략)

④ (생략)

<신 설>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①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생 략)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 업 및 기술훈련 · 재교육에 대 한 참여 확대

6의3.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 활용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 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 한 재학생의 수학 · 과학 교육 방법 고도화
- 2.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등 융합 교육 콘텐츠의 개발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과학관을 활용하여

<u>②</u> · <u>③</u> (생 략)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생활비 용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 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그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재학생의 수학·과학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연구환경 개선(이하 "이공학진흥"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③</u> -----

-<u>융자지원, 제2항에 따른 이공</u> 학 진흥 등에-----

-----.

<삭 제>

-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 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 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한다.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 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실태 파악, 경력 설 계 및 개발 지원, 연구 환경 개 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

<신 설>

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부는 같은 항에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및 연구기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 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제9조의6(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 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사람으로서 해 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다.

- 1.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 2.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 3.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 4.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 5.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6.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 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수 있다.

- 제9조의7(학생연구자의 안전·문화·성과 확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2.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관리 절차의 마련 및 운영

1. 학생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

- 3.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체계 수립 및 운영
-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제12조(이공계인력의 <u>재교육·재</u> 전<u>훈련</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 향상할 수 있도록 <u>재교육 또는</u>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재교육 또는</u> <u>재훈련의</u>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
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
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2조(이공계인력의 <u>재교육 등</u> )
①
<u>재교육, 재훈련 및 경</u>
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
다)을
②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 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 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3
재교육등의
<u>.</u>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또 는 퇴직예정 과학기술인, 고경 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 인(이하 "고경력 과학기술인등" 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
-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 개발사업 지원
-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은 퇴 후 우수연구자들의 안정적 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일·생활 균형)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 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연구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 ·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근로기 준법」 제58조에 따라 육아를 목적으로 재량근로제를 이용하 는 연구인력과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서 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되, 근 로시간 단축 등은 각 기관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한 다.

제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 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생 략)

<신 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 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 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관리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정부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 는 이공계인력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 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
  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
  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
  술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이
  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연구인력 육성·지원 체계구축
  -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 <u>3. 연구장려금 지원</u>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의 연구장려금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 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 하여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 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유통 지 원

- 2. 해외진출 지원
-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